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6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저울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요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 근거 마련 (임미애의원안)	3
가. 개요	4
나. 시행령·부령에 규율된 사항 법률에 상향	8
다.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자료 제출	12

I.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6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2. 3.
- (3) 회 부 일 : 2025. 2.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 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

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저울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요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 근거 마련 (임미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할당관세(제71조) ○ 저울할당관세 부과 ○ <신 설>	☐ 주무부장관·이해관계인이 저울할당관세 부과 요청 시 자료요청 및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근거 마련 ○ (현행과 같음) ○ <u>주무부장관·이해관계인이 저울할당관세 부과 요청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자료제출</u> ○ <u>기재부장관은 필요시 보완요청 및 주무부장관에 자료 송부</u> ○ <u>주무부장관은 저울할당관세 부과 요청하거나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 양허의 철회 및 수정(제78조) ○ 정부는 사정변경 등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경우 양허 철회·수정 가능 ○ <신 설>	☐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 확대 시 자료요청 및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근거 마련 ○ (현행과 같음) ○ <u>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의 경우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 확대</u> ○ <u>주무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확대 요청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자료제출</u> ○ <u>기재부장관은 필요시 보완 요청</u> ○ <u>주무부장관은 시장접근물량 확대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미애의원안 2025. 2. 3. 발의(의안번호 7866)

가. 개요

- 개정안은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저율·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제출해야하는 자료 등을 법률에 상향하고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¹⁾에 보고하는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현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접근물량 증량근거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자료 등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주무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확대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현행법은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 이를 할당관세

1)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를 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 것으로 이해됨.

2)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라고 함. 할당관세 부과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 또한 제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5년 5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125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철강 등)를 위한 소재·원료 품목, 취약 산업(농어업, 섬유 등) 지원 및 물가·수급 안정(LNG, LPG 등)을 위한 품목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위한 품목 등에 할당관세 제도가 운용되었음.

2024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3년 1조 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한 1조 4,301억원으로, 이는 2023년대비 LNG 및 원유(나프타·LPG 제조용) 할당관세 세율 인하 및 적용기간 확대³⁾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음.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LNG 및 원유 할당관세 세율 인하 및 적용기간 확대로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전년 대비 3,605억원 증가

[2020년~2024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추정)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세 수입액(결산, A)		70,585억원	82,270억원	103,241억 원	72,882억원	69,723억원
할 당 관 세	품목 수	79개	92개	119개	117개	125개
	세수지원액(B)	3,742억원	6,758억원	19,694억원	10,753억원	14,301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20.5%)	(80.6%)	(191.4%)	(△45.4%)	(33.0%)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5.3%)	(8.2%)	(19.1%)	(14.7%)	(20.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연도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에서 발췌

□ 이와 같이 할당관세의 적용 품목수와 세수지원(추정)액의 규모가 최근 3년간 각각 100개·1조원 이상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할당관세와 관련한 「관세법」상 통제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국회 등에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결산 관련자료에 할당관세 관련 사항이 첨부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할당관세에 대한 국회 등의 평가 및 환류작업도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관세지원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나 이와 관련한 통제도 부족한 상황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관세지원액은 2021년 1,442억원에서 2022년 5,579억원, 2023년 3,944억원, 2024년에는 5,278억원으로 증가했

고, 2021년 28개이던 지원품목 수는 2022년 44개, 2023년 45개, 2024년 72개로 증가하였음.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수입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품목수	28개	44개	45개	72개
수입금액	5.5조원	11.2조원	9.9조원	9.2조원
관세지원액 (추정치)	1,442억원	5,579억원	3,944억원	5,278억원

* 농축수산물 : HS 코드 상 1~24류에 속하는 품목

** 수입금액 :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의 수입액

자료: 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할당관세 품목 중 농축수산물등 최종소비재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개정안은 상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율 시장접근물량 확대 또는 저율·무관세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때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전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개정안은 크게 ① 시행령·부령에 규율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고, ② 주무부장관이 저율할당관세·시장접근물량 확대를 위한 자료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시행령·부령에 규율된 사항 법률에 상향

- 개정안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저울할당관세 부과 요청시 제출자료’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고(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접근물량 증량 요청시 제출자료’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시행령·부령 법률에 상향하는 개정안 내용 요약]

현 행	개 정 안
□ 저울 할당관세(「관세법 시행령」 제 92조) ○ <u>관계부처의 장·이해관계인이</u> 저울할당 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요청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자료제출(제1항) - 관세율표번호·품명·규격·용도·대체물품 - 제조용 투입원료 및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 해당연도와 전후 1년간 수급실적 및 계획 - 최근 1년간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 최근 1년간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 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적용기간 - 수량제한 시 수량 및 산출근거 ○ 기재부장관은 <u>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u>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제7항)	□ 저울 할당관세(안 제71조) ○ <u>주무부장관·이해관계인이</u> 저울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요청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자료제출(제3항)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기재부장관은 <u>관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u> 보완 요청 가능(제4항)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시장접근물량 증량(「양허관세규정」,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 및 구조적 요인으로 농림축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 이를 해소하고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 증량(「양허관세규정」 제7조) ○ 주무부 장관이 시장접근물량 증량 요청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자료제출(「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 -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대체물품 - 양허할 때와 시장접근물량 증량할 때의 여건변화내용 - 증량물량 및 산출의 실증적 근거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연도와 전후 3년간 수급실적 및 계획 - 해당연도와 전후 3년간 월별·연도별·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 <신 설>	○ 기재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자료 제출한 경우 주무부 장관에 자료 송부(제5항) □ 시장접근물량 확대(안 제78조) ○ (좌 동) (제4항) ○ 주무부 장관이 시장접근물량 확대 요청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자료제출(제5항)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기재부장관은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보완 요청 가능(제6항)

□ 개정안은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및 부령에 규율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 저율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관세법」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시행령」, 「양허관세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서는 저율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절차적 사항을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관세법령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자료제출 대상 등 절차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자료제출 등 절차적 사항 규정례]

법률	시행령
§37(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납세신고자는 <u>대통령령에 따라</u>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가능 ⑤ 결과 통보받은 자는 보고서를 <u>대통령령에 따라</u> 관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31(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사전심사 신청하려는 자는 <u>각 호의 서류 첨부해 제출</u> 하여야 함 ⑧ 다음 <u>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u> 를 <u>제출</u> 하여야 함
§43의2(압류·매각의 유예) ① 세관장은 <u>대통령령에 따라</u> 압류·매각 유예 가능	§40(압류·매각의 유예) ① 체납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u> 하여야 함
§46(관세환급금의 환급) ③ 납세의무자의	§53(관세환급금의 양도) 양도하고자 하는

법률	시행령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u>대통령령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 가능</u>	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u> 하여야 함
§51(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u> 부과청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59(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⑥ 신청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u> 하여야 함
§56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51에 따른 부과요청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71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신청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u> 하여야 함
§57(상계관세의 부과대상)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u> 요청하는 경우 상계관세를 추가해 부과 가능	§73(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⑥ 신청하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u> 하여야 함
§69(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조정관세 부과 가능	§91(조정관세) 조정관세 요청할 경우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u> 하여야 함
§71(할당관세) ① 저율할당관세 부과 가능	§92(할당관세) 할당관세 요청할 경우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u> 하여야 함
§106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 환급 가능	§124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② 환급받으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u> 하여야 함
...	...

□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 규정은 현행 시행령 및 부령에 규정·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상항 입법할 실익이 낮으며, 여타 탄력과세(덤핑방지관세, 조정관세 등)도 제출자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자료 제출

-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이 저율 할당관세 부과를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71조제6항), 주무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7항).

현 행	개 정 안
☐ 할당관세(제71조) ☐ <신 설>	☐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근거 마련(안 제71조제6항) ☐ 주무부장관은 저율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요청하거나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양허의 철회 및 수정(제78조) ☐ <신 설>	☐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근거 마련(안 제78조제7항) ☐ 주무부장관은 시장접근물량 확대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현행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저율 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요청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하는 횟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부처의 장관의 요청에 대해서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지고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최근 4년간 없는 것으로 파악됨.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 요청시 제출/승인 횟수]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출	승인	제출	승인	제출	승인	제출	승인
관계부처의 장	11	10	15	15	16	16	15	14
농림부장관	5	4	6	6	7	7	8	8
이해관계인 합계	2	-	-	-	-	-	-	-
농축산물 이해관계인	-	-	-	-	-	-	-	-

주1 : 관계부처의 장/이해관계인이 여러 품목을 한 번의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1회로 계상

주2 : 여러 품목 중 일부의 품목만 승인된 경우 1회로 계상

자료: 기획재정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확대 요청시 제출/승인 횟수]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출	승인	제출	승인	제출	승인	제출	승인
관계부처의 장	1	1	5	4	3	3	2	2
농림부장관	1	1	5	4	3	3	2	2

주1 : 관계부처의 장이 여러 품목을 한 번의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1회로 계상

주2 : 여러 품목 중 일부의 품목만 승인된 경우 1회로 계상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저율할당관세 또는 시장 접근물량 확대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할당관세 운용으로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부의 합리적인 운용을 촉구하기도 하였음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고기 관세지원액 88%를 수입유통업자가 독식하는 등 정책효과가 낮게 나타났다는 문제인식 하에 “TRQ(저율관세할당) 및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고⁵⁾,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농산물 할당관세와 TRQ의 효과에 선을 긋거나 해당품목(혹은 대체품목)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비판론도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⁶⁾.

□ 이에 개정안은 저율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개정안은 농가의 영업권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4) 농민신문, ‘경실련 “무분별한 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2023. 10. 16.

5) 국회 예산정책처,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NABO FOCUS』 제71호, 2024. 5. 14.

6) 국회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4. 8. 19.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할당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도 함께 운영 중임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⁷⁾. 2025년 기준 노지채소 등 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보전(평년 가격의 80% 수준),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약 207억원, 수급변동이 큰 주요 채소류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을 약 294억원 편성하였음.

이와 같이 할당관세 부과로 수입물량 증대 및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손실을 보전할만한 재정 지원 정책도 일부 추진 중인바, 개정안과 같이 할당관세에 따른 부작용을 근거로 주무부장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의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축수산물 물가 증가율이 높아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물가지수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는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2.3%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증가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음.⁸⁾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로 과실·채소류 중심의 물가상승 견인 효과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먹거리 등

7) 다만 동 재정지원 정책은 할당관세 부과 여부 및 피해 발생여부를 전제로 편성되는 것은 아님.

8)통계청,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2025. 6. 4.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음. 이와 더불어 국제관계의 불안정성 심화로 이른바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근거로 할당관세에 대해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을 제한하는 경우, 급격한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는 정책시행이 어려워 할당관세 도입으로 국가총경제의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상기한 [표]와 같이 수십 건의 저율 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주무부 장관이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 경우 저율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할당관세의 도입에 따른 물가 안정의 효과는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게 귀속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할당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한 관련 품목 산업 종사자들에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 사회적 총후생은 증가하더라도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할당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편익과 비용의 변화 등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할당관세 부과 시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관세법」 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71조(할당관세)에 따른 ‘할당관세 전년도 부과실적 및 그 결과’ 및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따른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임⁹⁾.

□ 기획재정부는 부처간 제출자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할 경우 수급정책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사전보고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개진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158

9)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